제7호 2013년 4월 25일 (목) 농(축)협조합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위원회

# 농(축)협조합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

전화: (070)7165-0017 전송: (02)3401-6539 http://kaffcoop.kr kaff0001@gmail.com

## 제4영역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요령, 감사요령)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?

- 제4영역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요령, 감사요령)은, 일선 농축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조합원 중심의 관점에서 올바로 편성함은 물론, 조합 감사로서 주어진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과 소양을 갖췄는지를 측정하 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입니다.
- 제4영역의 문제는 제3영역에서 다뤘던 재무제표의 분석·해석 기법에 덧붙여, 사업계획·자금의 조달 및 운용, 기획관리·채 권채무·경제사업 부문의 기초적인 감사기법 등 법인체인 협 동조합의 올바른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매 우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하지만 농축협임원교육 중급·심화과정을 수강하시거나, 본 특 강을 제대로 들으시고 예제를 풀어보신다면, 문제의 유형 및 출제 패턴을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므로,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성실히 학습하셔서 높은 점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

# 제4영역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요령, 감사요령)의 핵심 내용 정리 (1)

- "2013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"를 반드 시 확보하여 학습하십시오!
- 농협중앙회(회원종합지원부)에서 발행한 "2013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"는 <u>한농연중앙연합회 홈</u> 페이지(www.kaff.or.kr)의 "정보마당→한농연자료"의 "공지" <u>란에 올라있는 자료 혹은 1139번 자료</u>를 활용하시면 됩니다
-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글 파일 5개를 내려받은 뒤, 가까운 인쇄소에 맡기셔서 책자를 제작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안(2012년 11월말 예산 대의원총회시 배포된 내용)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
- 농협중앙회(회원종합지원부)에서 발행한 "2013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"는 말 그대로 "지침"일 뿐이지, 일선 농축협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끔 이를 적용하여 자체적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편성·적용하도록 돼 있 습니다
-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2012년 11월 중순 혹은 하순에 개최 된 예산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상정되어 의결되었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내용을 반드시 확보하여 이 내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학습하셔야만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

#### ○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

- 자체 중장기 발전방향 및 '13년 농·축협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

-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반복적이거나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, 농업인 실익 지원 중심의 (신규)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
-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
-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 기관 사업과 연계한 사업추 진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

#### ○ 세부 기준

- 자체 중장기 발전방향, 2013년 경영목표 및 사업부문별 운영 방침에 부합한 신규사업 개발, 기존 사업의 내실화 등을 포 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
- <u>모든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을</u> <u>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</u>
- 사업별 계획물량은 목표손익과 연계하여 상향식으로 자율 책 정하되, 2012. 9월말 가결산 결과, 최근 3개년 평균성장률, 관련 부서 지도기준, 지역 내 경제여건 전망, 농축산물 생산 량 등을 감안하여 책정
-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사업 전환
- 연도중 비계획사업은 예산 추가편성 및 예비비사용 등을 동반하게 되어 전체 수지예산에 영향을 초래하는 바, 비계획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
- 비계량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 실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 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실화 도모
-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방침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농축산업 개발에 적극 참여
- 지역실정과 입지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, 특히 도시형 농·축협은 소비지 농·축협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
-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수익성이 줄어든 사업 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
- 적기시정조치(경영개선계획)의 사업계획서 반영 및 지역본부 사전 검토
- 사업계획 총회의결 시 수립결과에 따른 조합원의 관심 및 수 혜부분을 별도 설명하여 조합원의 사업 참여도 제고

#### ○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

- 제1단계 (7월-9월) : 자료수집
- 조합원·작목반·영농회·농업경영인회·여성농업인·농민회 등 의견 수렴. 지역 농업생산 새로운 개발에 조합원에 부응할 수 있는 실익사업 추진
- ☞ 여론 수렴은 이사회 심의자료 첨부 → 대의원총회에 결과 첨부
- 제2단계 (10월-11초) : 계획안 작성
- 조합 기획부서에서는 중앙회에서 시달된 사업계획지침서를 참고로 조합 9월 가결산 성과, 12월 추정치 등을 참고하여 경영목표, 방침설정, 종합안 등을 작성
- ☞ 대의원 분과위원회실시 투명화→분과위원장은 각 부서별 이

- 시→9월 유영공개→이사회 9월 가결산 보고→이사회 사업계 | 교육지원사업비 편성·운용의 기본방향 획서 심사분석 실시→이사회 사업계획서 심의할 고정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중앙회 사업검토 실시
- 제3단계 (11월10-20일) : 사업계획서 이사회 부의 심의
- ☞ 최소한 사업계획서 심의안 1주일 전부터 이·감사 검토실시
- ☞ 심의는 이사회 권한으로 형식적인 참여보다 최소한 2일 이 상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조합원 실익과 경제사업 유통. 판매활성화 실시
- 제4단계(11월 20일~30일) :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(안)부의 의결
- ☞ 정관례 제36조 대의원 소집통지는 개회 7일 전까지 발송

#### ○ 자금계획수립

- 수지목표에 의거 자율 책정한 사업물량에 근거하여 조달 및 운용규모를 책정하되. 자금 및 각종 물량공급 계획의 적기 시행으로 사업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
- 특히, 농협 재무기준 제4조에 의한 신용사업자금의 타사업 운용 한도(예수금의 20%)를 초과하여 운용하지 않도록 유의 (재무기준 제4조는 연말기준 이행사항이 아니라 매월말 기준 이행사항임)

#### ○ 자금조달부문 관련 유의사항

- 2013년도 신규고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농·축협은 **가급적** 투자액 중 자부담액의 50% 이상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규 조성하여 충당
- 법정적립금 등 제적립금은 처분대상 잉여금의 70% 이상 내 부적립하도록 계획 수립

#### ○ 자금운용부문 관련 유의사항

- 출자한도 : 농협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범 위 이내,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

#### 고정투자계획

- "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"에서 정한 한도이내 투자 : 업무용부 동산 투자비율(순업무용부동산/자기자본): 자기자본의 100% 이내

### ○ 수지예산편성지침

- 사업부문별, 회계별 수익 대 비용률은 목표 매출이익이 달성 되도록 전년도 결산실적 및 2012년도 연말 추정실적과 각종 요율을 종합하여 책정
- 사업부문별 예산책정 규모는 해당 사업부문 2012년 예상 매 출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

#### ○ 판매비와 관리비

- 해당 농.축협의 관련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여 2012년말의 예상 집행실적, 경영여건과 손익현황, 2013년도 예상 매출총 이익 증가율 및 예상손익, 인력수급 현황, 경영환경 변화 등 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책정
- Zero-Base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감축의지 반영
- 비례성예산은 매출총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, 수 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례성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

-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 영농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조합원 실익증대 도모
- ☞ 조합원 소득증대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지원 확대
- ☞ 1회성·행사성 및 비능률·비생산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 는 폐지하고 영농자재 지원 등 실질 조합원 영농위주로 직 접지원 강화
- 농업 농촌 활력화 및 농업인 실익사업 지속적인 발굴 지원
- ☞ 농축산물 유통활성화.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제사업 활성화 위주에 집중
- ☞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
- ☞ 농촌사랑운동의 내실화를 통한 지속 추진
- 교육지원사업비는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전 년 대비 매출총이익 및 당기손익 감소조합은 교육지원사업비 증액 자제
-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성 재검토로 비능률·비생산 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·폐지하고 우수 농축산물 생산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과 조합원 소득 증대 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 지원
- 교육지원사업비는 순수한 교육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되, 각종 행사·회의는 시기 및 사안별로 가급적 통폐 합하여 편성
- "환원사업비"는 조합원의 영농 및 생활에 공동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숙원시설 설치 지원,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, 재해 지원에 국한하여 편성
- 집중호우 및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조합원의 생활 및 영농·양축 기반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환원사업비 (항)중 재해지원비(목)에 예산 편성하되 재해지원시 객관적인 피해 입증자료 반드시 징구
- 농업기술 향상 및 생산지원을 위한 시설·장비 등 지원비, 농 업경영개선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, 환경보전비, 방역진료비 등은 영농지도비(항)로 편성하되 가급적 전체 교육지원사업비 의 65%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고 영농자재지원비(목)는 40% 이상 편성

(단, 영농지도비(항)속의 행사비, 협찬비, 연찬회비는 감축계 획 수립)

### 제4영역의 예제를 풀어봅시다

- 1. 조합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( )에 의거하여 조합 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. ( )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?
- ① 농업협동조합법
- ② 조합 정관
- ③ 규약
- ④ 규정
- 2. 조합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, 해당 사업연 도 개시 ( )개월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 결을 확정하여야 한다. ( ) 안에 들어가야 할 개월 수로 올 바른 것은?
-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4개월
- 3.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은 총회 구성원의 ( ) 출석과 출석자의 ( ) 찬성으로 의결한다.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

#### 들어가야 할 단어는?

- ① 전원 ② 3분의 1 ③ 3분의 2 ④ 과반수

- 4. 농협법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 내용이 아닌 것 은?
- ① 신용사업
- ② 경제사업
- ③ 교육지원사업
- ④ 통신사업
- 5. 2013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맞는 것은?
- ① 농협중앙회 계획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
- ② 전무, 상무 및 직원들의 방침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
- ③ 조합장의 전결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
- ④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
- 6. 업무용 부동산 투자 비율은 자기자본의 몇 % 이내로 하게끔 지도기준이 되어 있는가?
- ① 50% ② 60% ③ 75% ④ 100%

- 7.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과 관련하여, 다음 중 "보수"의 지 급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?
- ① 계약직 직원
- ② 업무직 직원
- ③ 전무
- ④ 조합장
- 8. 아래의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?
- ① 조합원에게 영농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지원함을 원칙 으로 한다
- ② 조합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
- ③ 직원의 업무에 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
- ④ 조합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
- 9.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하여 비조합원에게 직접 영농자재를 지원 할 수 있는가?
- ① 할 수 있다
- ② 할 수 없다
- ③ 정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
- ④ 영농자재에 한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
- 10.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 다고 생각되는 것은?
- ① 농업인(조합원)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사업계획을 수립해 야 하다.
- ② 농업인 실익지원 중심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야 한다.
- ③ 관행적이거나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.
- ④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, 양축 지원을 중점 반영해야 하다.
- \* 이 문제의 문제풀이와 해답은 별도 제공되는 mp3 파일을 통 해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보다 자세한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께서는, "옥답 에듀 http://edu.okdab.com"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뒤, "배움터→온라인강의→정보화 활용 역량→스마트농업경 영"에 수록된 인터넷 강의를 차례대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2012년도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중급과정 교재 및 동 영상 강의 CD 구입 방법
  - 중급과정 교재 및 강의 CD를 자택에서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  - 가격 : 1만원(입금 계좌 : 농협은행 301-0095-5104-81, (사)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)
  - 문의 : 한민수 실장 (070-7165-0017, 010-2230-9435)
- \* 농(축)협조합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 mp3 강의는 "팟빵 (podbbang)" 사이트를 통해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-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(www.kaff.or.kr)의 첫 화면 맨 <u>밑을 보시면 "농(축)협조합관리사 시험 대비 특강"이라는 회</u> 색 글자가 있는데, 여기를 누르셔서 "팟빵"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농(축)협조합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특강 mp3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\* 아울러 본 특강의 mp3 강의는 "아이튠즈(iTunes)"를 통해서 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"아이튠즈(iTunes) 스토어에서 "농(축)협조합관리사"로 검색 하시면 편리하게 강의를 듣거나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
- \* 2013년도 농·축협 임원 경영능력배양 교육(중급과정) 안내
- 교육 시기 : 2013년 2월부터 우선 접수된 시군부터 진행
- 교육 시간 : 오전 09:00부터 오후 19:00까지 당일 교육
- 교육비 : 40,000원/1인
  - 강사비(53%), 식비(2식), 교재 제작비, 강의장 임대비, 다과, 출장비 등은 국고지원
- 교육 대상 : 농(축)협 이사, 감사,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 운영 에 관심 있는 조합원
- 주관 기관 : (주)한국농업연수원
- 접수 문의
  - 전화 : 063-352-3051~2, 010-5055-8719
- 이메일 : agri1977@empal.com - 담당자 : 교육기획팀장 박재영